

고성군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

(의안번호 제602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2. 13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2. 14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12. 21

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건축법, 시행령,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를 개선·보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건축위원회의 설치운영·회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내지 제3조의 9)
- 나. 표준 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범위 건축물의 용도를 정함.(안 제6조)
 - 주택,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, 창고
- 다.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함.(안 제8조)
 -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㎡미만을 제1,2종 근린생활시설 100㎡이하로
- 라. 대지안의 조경의무를 완화함.(안 제12조)
 -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5% 내지 10%
 - 건축 연면적 300㎡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: 조경의무 제외
- 마. 도로 지정을 위한 구비요건을 정함.(안 제14조)
 - 5가구 이상, 5년 이상 통행로로 사용한 도로

바.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완화함.

(안 제15조 내지 제20조)

- 일반주거지역내 : 세차장, 매매장, 운전학원 추가 등
- 일반상업지역내 : 단독주택 등 추가
- 일반공업지역내 : 식물관련 시설 추가
- 생산녹지지역내 : 주유소 등 추가
- 자연녹지지역내 : 폐차장 추가

사. 대지의 분할제한 범위를 정함.(안 제26조)

- 주거지역 : 60m² 미만
- 상업지역 : 150m² 미만
- 공업지역 : 150m² 미만
- 녹지지역 : 200m² 미만
- 기타지역 : 60m² 미만

아. 용벽 및 공작물의 범위를 정함.(안 제39조)

- 냉각탑 등 2톤 초과시설 및 인양능력 2톤 이상 크레인 등 추가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안은 1993. 7. 20 조례 제1336호로 제정 공포되어 3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여 왔으나 금차에 건축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조례를 개선 보완하여 현행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 등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이 조례의 제정으로 민원이 야기될 부분의 조항은 없는지
- 답 : 종전의 규제 조항보다 완화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없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12.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